

의안번호	제 143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9월 일 (제 263 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연만흠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7년 9월 3일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만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
----------	-----

발의연월일 : 2007년 9월 3일
 발 의 자 : 연만흠·이필용·김환동
 박재국·이종호·강대원
 조영재(7인)

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변경 등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개정(2001.1.26)에 따라 위원자격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2조제1항)
-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보완(안 제3조제1항)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2005.5.18 신설)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 주식의 처분제한 연장 승인을 추가함
 - (2)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심의 및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추가
- 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2006.12.28)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변경(안 제3조제2항)
 - (1) 도의원, 3급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자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변경
 - 4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는 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2) 시·군의회 의원 및 시·군의 4급공무원 및 그 퇴직자 : 시·군공직자윤리위원회 ⇒ 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변경
- 라. 「공직자윤리법」 제8조 개정(1994.12.31) 및 제23조 삭제(2001.7.24)에 따른 관련 법 조문 변경
 - (1) 법 제8조제6항⇒ 법 제8조제7항, 법 제8조제11항 ⇒ 법 제8조제12항(안 제3조제1항제2호, 안 제

6조제2항제1호)

(2) 법 제23조 ⇒ 법 제24조(안 제6조제1항제4호)

마.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조례 제 호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6.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7.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한 안건의 심의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3. 시·군의회 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단서 중 “재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4호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u>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u></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 2조(구성) ①----- ----- ----- -----</p> <p>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u>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u></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 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u>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p> <p>2. <u>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u> (신설)</p> <p>3. (생략)</p> <p>4. (생략)</p>	<p>제 3조(기능) ①----- -----</p> <p>1. <u>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p> <p>2. -----제12항----- -----</p> <p>3. <u>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u></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고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신설</u>)</p> <p>(<u>신설</u>)</p> <p>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p> <p>1.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2. 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제 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p>6.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p> <p>7.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한 안전의 심의</p> <p>②----- -----</p> <p>1. 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p> <p>2.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p> <p>3. 시·군의회 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p> <p>제 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p> <p>③----- ----- ----- 출석위원 ----- -----</p> <p>1. -----제7항----- ----- 제12항----- -----</p>

현 행	개 정 안
<p>2.~3. (생략)</p> <p>4. 법 제23조 내지 법 제 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p> <p>③ (생략)</p> <p>④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p>4. 법 제24조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 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관계법령 발취

□ 공직자윤리법

第3條(登錄義務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이하 "登錄義務者"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産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1999.12.31, 2000.12.29, 2001.1.26, 2003.3.12, 2005.12.29, 2006.2.21>

-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政務職公務員과 地方議會議員
-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 5. 法官 및 檢事
-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6. 大領이상의 將校 및 이에 상당하는 軍務員
- 7. 教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大學院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포함한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각종 學校의 長, 特別市·廣域市·道の 教育監·教育長 및 教育委員
- 8.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警察公務員과 消防正 및 地方消防正이상의 消防公務員
-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採用된 契約職公務員
- 9.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 金融監督院의 院長·副院長 및 監事,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會長 및 常任監事
- 10.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이하 "公職有關團體"라 한다)의 任員
 - 가. 政府投資機關, 韓國銀行 및 政府의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團體 기타 政府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機關·團體
 - 나.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地方公團 및 地方自治團體의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團體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機關·團體
 - 다. 任員의 選任에 있어서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등을 요하거나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員을 選任하는 機關·團體
- 11. 기타 國會規則·大法院規則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職員

②삭제 <1993.6.11>

第8條(登錄事項의 審査)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登錄된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⑤ (생략)

⑥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와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錄事項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要求하고 陳述을 받을 수 있다.

⑦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財

物 또는 財産上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法務部長官(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⑧~⑩ (생략)

⑪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財産公開對象者가 아닌 登錄義務者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를 그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機關의 長은 審査結果를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은 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頼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4.12.31>

⑬~⑭ (생략)

第9條(公職者倫理委員會) ①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政府·地方自治團體 및 特別市·廣域市·道教育廳에 각각 公職者倫理委員會를 둔다.<改正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財産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결과의 처리
2. 第8條第1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
3.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
4.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사항

②각 公職者倫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改正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 1.~4. (생략)
5. 特別市·廣域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 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생략)
8.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號 내지 第7號외의 公職者와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당해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나.~마.(생략)
 - ②~⑥.(생략)

第20條의2(국회 등에의 보고 <개정 2006.12.28>)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第1項의 年次報告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3.6.11]

第23條 삭제 <2001.7.2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 ②법 제3조제6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라 함은 2급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 ③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9.12.7, 2000.4.18, 2001.4.27, 2001.11.29, 2005.2.11, 2005.7.26, 2006.6.29, 2006.8.17, 2006.12.2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나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4. 감사원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4의2.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5.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
 - 6.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과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 7.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8.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 9.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읍·면·동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10.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1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 12.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
- ④제3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부서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1.4.27, 2001.6.30>

제19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4.12.31, 2005.2.11, 2007.6.21>

-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21>